1. 개정이유

우리 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고시·운영 중으로, 규제 완화 요구 등에 따라 제도운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본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 제한 기간에 따른 감점 규정 삭제(안 별표 1, 별표 2, 부표 4.①)
- 나. 신용도 평가 시 벌점 평가대상 및 산정방식 명확화(안 별표 1, 별표 2, 부표 4.②)
- 다. 자구 수정(제3조, 제13조, 부표 1.①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13조 중 "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"를 "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"으로, "201 7년 7월 1일"을 "2024년 7월 1일"로 한다.

별표 1의 신용도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평가항목	배점	항목별 세부평가기준			
신용도	(10)	•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.2점씩 감점 • 벌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			

별표 2의 신용도의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(7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평가형	항목	배점		항목별 세부평가기준			
신용도	업무정지 등 제한 및 벌점 (7)	(10)	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.2점씩 감점 벌점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				
	신용		•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(회사채의 경우)				
	등급		A- 이상	BBB- 이상	B- 이상	CCC+ 이하	미제출
	(3)		3	2.7	2.4	2.1	1.8

부표 1. 담당건축사, 참여건축사(보)의 경력 및 실적 제1항 중 "입찰참가 제한"을 "업무정지 등 제한"으로 한다.

부표 4. 신용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업무정지 등 제한은 업체, 담당건축사, 참여건축사(보)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,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. 부표 4. 신용도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②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, 담당건축사, 참여건축사(보)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, 별표 2, 부표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)	제3조(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)
<u>①</u> (생 략)	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1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	제13조(재검토기한)
관은 <u>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</u>	<u>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</u>
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	<u>관리에 관한 규정」</u>
<u>령 제334호)</u> 에 따라 이 고시에	
대하여 <u>2017년 7월 1일</u> 기준으	<u>2024년 7월 1일</u>
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	
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	
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	
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